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7 선고 2019가단1017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2. 2. 15 선고 2021나14175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7 선고 2019가단101754 판결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

담당변호사 김용주

변 론 종 결 2021. 6. 16.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주식회사 E 발행의 보통주식(액면금액 500원) 80,000주에 관하여 2017. 7. 3.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위 1항 기재 보통주식 80,000주를 양도하고, 주식회사 E에게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

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2021. 6. 7.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청구취지 제1항의 주식회사 E '보통주식'이 '액면금액 500원의 80,000주임'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청구취지 제3항은 피고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게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뜻으로 선택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통신기기,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, D은 'F'라는 상호로 음향영상기기 등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9. 7. 1.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제작한 전자칠판, 실물화상기 등의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.

나. 원고가 D을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6나57918 동산인도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, 2017. 2. 10. 'D은 원고에게 36,36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4. 12.부터 2015. 10. 3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고 한다), 이 사건 판결은 2017. 4. 28. 확정되었다. 2019. 1. 14. 현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약 6,500만 원(소송비용확정액 포함)에 이른다.

다. 한편, D은 2017. 7. 3. 피고와 사이에, D이 피고에게 주식회사 E 보통주 80,000주(액면금액 500원, 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고 한다)를 4,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'주식양수도계약'을 체결하였고,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'이라고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3 내지 9, 15, 3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.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, 주식회사 E에게 위 주식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피고는 D에게 2011. 9. 17. 1,800만원, 같은 달 20. 1,500만 원, 같은 달 28. 400만 원 합계 3,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, D이 2014년 6월경 피고에게 2014. 12. 31.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게 되었다. 피고로서는 D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을 뿐 D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,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.

3. 판단

가. 인정사실

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8, 19, 28호증, 을 제1 내지 4, 7호증, 을 제8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(1)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명100646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, 위 사건에서 2017. 6. 26. ‘D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.’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졌다.

(2) D은 2017. 9. 25. 선서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. 그 재산목록에는 ① 가사비품

항목으로 냉장고(2008년식), TV(2008년식), ② 사무기구 항목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2대(2013년 1월식), 책상, 응접테이블(2011년식), ③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항목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받는 급여 월 1,500,000원, ④ 예금 항목으로 주택청약저축 1,180,000원, 은행예금으로 3,418,867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.

또한 D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'F'를 운영하고 있었는데, 2017. 12. 31. 기준 ⑤ F의 당기순이익이 1,866,593원이며,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대상 부동산인 ⑥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(각 2/11 지분을 보유함)의 감정가액은 22,477,180원이다.

중고 가사비품과 중고 사무기구 가액이 고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, D의 적극재산 합계는 대략 3,000만 원 내외라고 판단된다.

(3) D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소극재산으로, 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합계 58,589,260원(= 53,256,940원(= 판결 원금 36,360,000원 + 2012. 4. 12.부터 2015. 10. 30.까지 연 6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,752,151원(= 36,360,000원 × 0.06 × 1,297일 ÷ 365일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음) + 2015. 10. 31.부터 2017. 7. 3.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,144,789원(= 36,360,000원 × 0.15 × 612일 ÷ 365일) + 소송비용액확정결정 5,332,320원))과 ② 피고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 37,000,000원 및 ③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1,584,585원이 있어 총 소극재산이 147,173,845원(= 58,589,260원 + 37,000,000원 + 51,584,585원)이므로,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.

나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, 원고의 D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D이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등에 비추어 D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직전 D의 적극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재산이 이 사건 주식이었고,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이 여러 채권자 중 피고에게만 차용금지급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D에 대한 3,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대물변제 받을 의도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며, 주식회사 E에게 위 주식양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정석